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7년 10월 13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3항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4.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204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5.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204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제3항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행복한 TDF 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하나UBS 행복한 TDF 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하나UBS 행복한 TDF 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4. 하나UBS 행복한 TDF 204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5. 하나UBS 행복한 TDF 204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 가목, 나목 및 마목,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 가목, 나목 및 마목,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7년 10월 13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3항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4.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204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5.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204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제3항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행복한 TDF 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하나UBS 행복한 TDF 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하나UBS 행복한 TDF 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4. 하나UBS 행복한 TDF 204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5. 하나UBS 행복한 TDF 204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3호 내지 제6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6호 가목, 나목 및 마목,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3호 내지 제6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6호 가목, 나목 및 마목,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변경전 : 하나UBS 행복knowhow연금 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변경후 : 하나UBS 행복한 TDF 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펀드명 및 클래스명 변경
2) 클린클래스(CG) 추가
3)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설정 후 3년 경과)
4) 투자위험등급 변경
5) 참조지수 삭제(모펀드 참조지수 포함)
6)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7년 10월 13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하나UBS 행복한 TDF 2025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종류 C / 종류 C-E <추가>	종류 C-P / 종류 C-PE 종류 CG BX824
제 1 조(목적)	②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이다.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③이 투자신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투자신탁이다.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삭제> <삭제>
제 2 조의	①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삭제>

2(투자신탁의 가입제한 등)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한다.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②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에 한한다.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삭제>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제3항 1. 종류 C 수익증권 : 가입 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2. 종류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추가>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행복한TDF 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제 3 항 1. 종류 C-P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2. 종류 C-P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4. 종류 C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10조	①항	①항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1. 종류 C 수익.000000000증권 2. 종류 C-E 수익증권 <추가>	1. 종류 C-P 수익증권 2. 종류 C-PE 수익증권 4. 종류 CG 수익증권
제16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 (보수)	제 3 항 [종류 C 수익증권] (생략) [종류 C-E 수익증권] (생략) <신설>	제3항 [종류 C-P 수익증권] (현행과 동일) [종류 C-PE 수익증권] (현행과 동일) [종류 CG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6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이 상충될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C-P 클래스 및 C-PE 클래스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이 상충될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행복knowhow 연금2025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하나UBS행복한 TDF 2025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투자 위험등급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집합투자 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집합투자 기구의 개요	**가입자격**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종류 C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가입자격** <삭제> 종류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종류 C-E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수익증권 종류 C-PE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 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낮은 투자비중으로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집합투자기구로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자투자신탁 집합투자기구 보다 가격변동성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 등급 중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4.86%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4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1)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생략) <신설>	**1. 과세** (1)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C-PE 수익증권 가입자 (현행과 동일) (3)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G 수익증권 가입자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25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하나UBS 행복한 TDF 2025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25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C C-E <추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행복한 TDF 2025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C-P C-PE CG 펀드코드: BX824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바. 가입자격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25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C C-E <추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행복한 TDF 2025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C-P C-PE CG 펀드코드 : BX824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25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하나UBS 행복한 TDF 2025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 :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E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추가>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PE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G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

	식-재간접형] • 참고지수 :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참고지수 :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식-재간접형]** • 참고지수 : <삭제>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참고지수 : <삭제>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하기 위하여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낮은 투자비중으로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집합투자기구로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자투자신탁 집합투자기구 보다 가격변동성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 등급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별첨 참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4.86%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별첨 참조>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 :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E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PE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table>
<tr><td></td><td><종류 CG 신설></td><td>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G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
종류 C-E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
종류 C-E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종류 C
종류 C-E

<CG 클래스 신설></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P
종류 C-PE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P
종류 C-PE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종류 C-P
종류 C-PE

<table><tr><th>구분</th><th>1년후</th><th>3년후</th><th>5년후</th><th>10년후</th></tr><tr><td>종류 CG</td><td>57</td><td>181</td><td>317</td><td>722</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신설></td><td>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C-PE 수익증권 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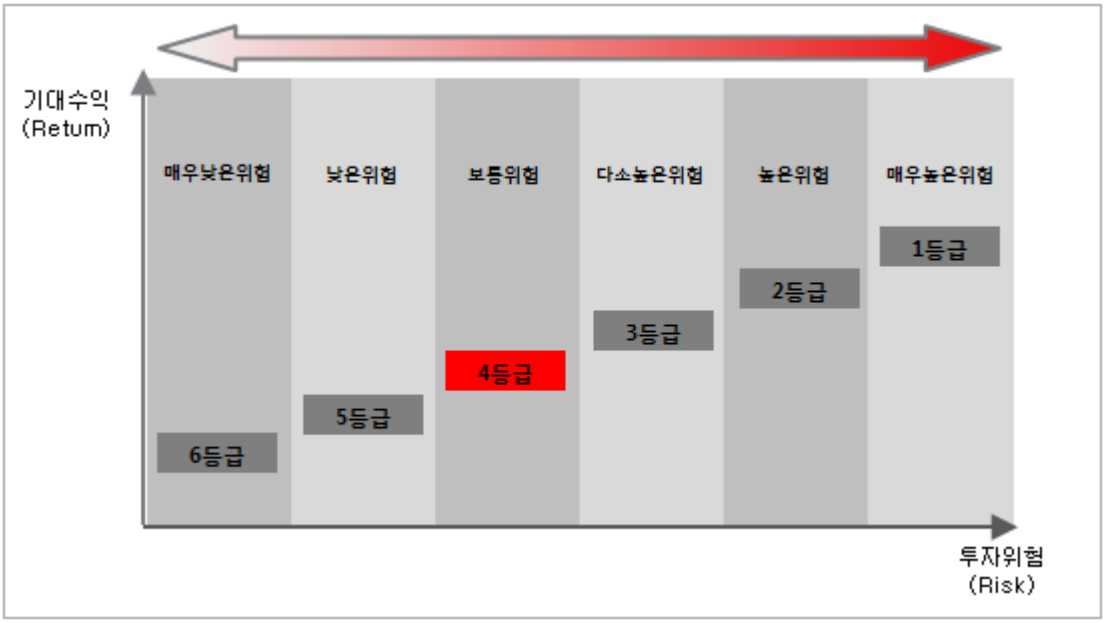
(4)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td></tr>
</table>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설>	(5)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종류 CG 수익증권 가입자)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

		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이하 순차적 연번 변경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주 1) 비교지수 : (KP200* 0.2 + MXWO*0.45 + RUGL*0.05 + MXEF *0.2 + RICIGLER *0.05 CALL*0.05)*0.4++(CitiWGBI * 0.3 + IBOXIG *0.2 + LHVLTRUU *0.1 + 매경BP * 0.35 + call*0.05) *0.5+MSDISETD * 0.1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삭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별첨>
[변경전]



주) 이 투자신탁은 추후 추후 설정기간이 3 년이 경과하는 경우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 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 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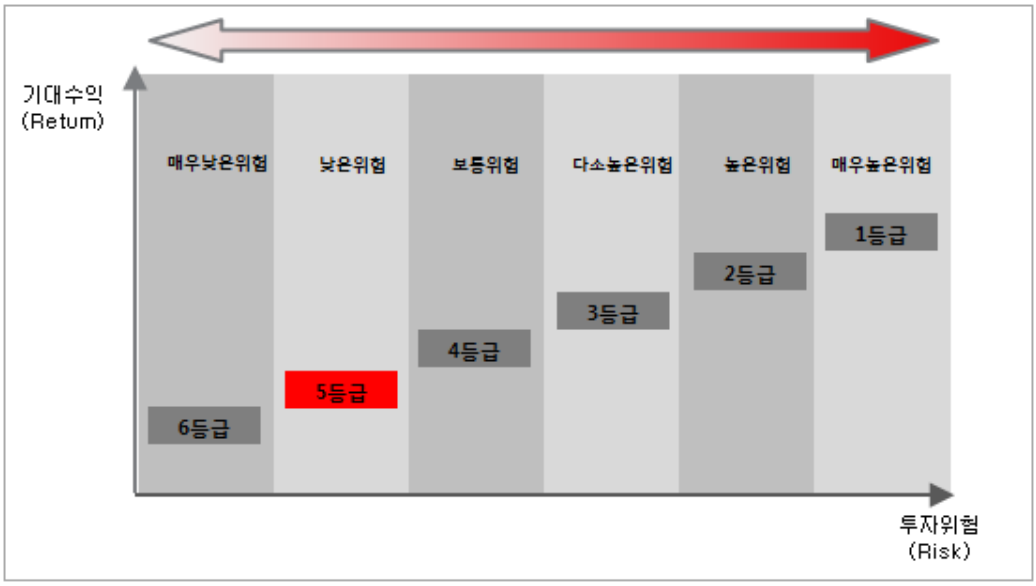
: 최직근 결산일 기준 설정된 후 3년이 미경과한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

		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위험등급분류기준과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 "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5)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6)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펀드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7) 다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펀드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8) 최대손실률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제외한 것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률을 말합니다. 다만, 당사가 추정 또는 예상한 최대손실률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높은 레버리지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합성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이 분류됩니다.

[변경 후]



주1) 이 투자신탁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변경전 : 하나UBS 행복knowhow연금 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변경후 : 하나UBS 행복한 TDF 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펀드명 및 클래스명 변경
2) 클린클래스(CG) 추가
3)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설정 후 3년 경과)
4) 투자위험등급 변경
5) 참조지수 삭제(모펀드 참조지수 포함)
6)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7년 10월 13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3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 행복한 TDF 203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종류 C / 종류 C-E <추가>	종류 C-P / 종류 C-PE 종류 CG BX825
제 1 조(목적)	②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이다.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③이 투자신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투자신탁이다.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삭제> <삭제>
제 2 조의	①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삭제>

2(투자신탁의 가입제한 등)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한다.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②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에 한한다.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삭제>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제3항 1. 종류 C 수익증권 : 가입 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2. 종류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추가>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행복한 TDF 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하나UBS 행복한 TDF 20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제 3 항 1. 종류 C-P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2. 종류 C-P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4. 종류 C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항 1. 종류 C 수익증권 2. 종류 C-E 수익증권 <추가>	①항 1. 종류 C-P 수익증권 2. 종류 C-PE 수익증권 4. 종류 CG 수익증권
제16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수익자의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 (보수)	제 3 항 [종류 C 수익증권] (생략) [종류 C-E 수익증권] (생략) <신설>	제3항 [종류 C-P 수익증권] (현행과 동일) [종류 C-PE 수익증권] (현행과 동일) [종류 CG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6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제41조(환매수수료)	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C, C-E, C-P2 수익증권 : 없음 ③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이 상충될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C-P 클래스 및 C-PE 클래스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이 상충될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행복knowhow 연금203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행복한 TDF 203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투자위험등급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21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가입자격**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종류 C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E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가입자격** <삭제> 종류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PE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보수 (생략) ※ 주석사항 · 종류C-P2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보수** (업데이트) ※ 주석사항 · 종류C-P2 및 CG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Ⅱ.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Ⅱ.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Ⅱ.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 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Ⅱ.집합투자기구의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투자정보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변동성이 크거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일부 투자함으로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높은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5.75%임에 따라 6 등급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1)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생략) <신설>	**1. 과세** (1)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C-PE 수익증권 가입자 (현행과 동일) (3)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G 수익증권 가입자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3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 행복한 TDF 2030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30 증권자투자신탁주식권혼합-재간접형] C C-E <추가> 주)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2021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3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행복한 TDF 2030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C-P C-PE CG 펀드코드: BX825 주)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2021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하나 UBS 행복한 TDF 203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바. 가입자격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3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C C-E <추가> 주)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2021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3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행복한 TDF 203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C-P C-PE CG 펀드코드 : BX824 주)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2021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하나 UBS 행복한 TDF 203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3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 :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E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추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하나UBS 행복한 TDF 203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PE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G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21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21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참고지수 :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참고지수 : <삭제>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참고지수 :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참고지수 : <삭제>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변동성이 크거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일부 투자함으로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높은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 년이상입니다. <별첨 참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5.75%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별첨 참조>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 :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E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PE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table>
<tr><td></td><td><종류 CG 신설></td><td>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G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
종류 C-E
<CG 클래스 신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
종류 C-E
<CG 클래스 신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생략)
종류 C
종류 C-E
<CG 클래스 신설></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P
종류 C-PE
종류 CG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P
종류 C-PE
종류 CG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종류 C-P
종류 C-PE

<table><tr><th>구분</th><th>1년후</th><th>3년후</th><th>5년후</th><th>10년후</th></tr><tr><td>종류 CG</td><td>57</td><td>181</td><td>317</td><td>722</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신설></td><td>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C-PE 수익증권 가입자

(4)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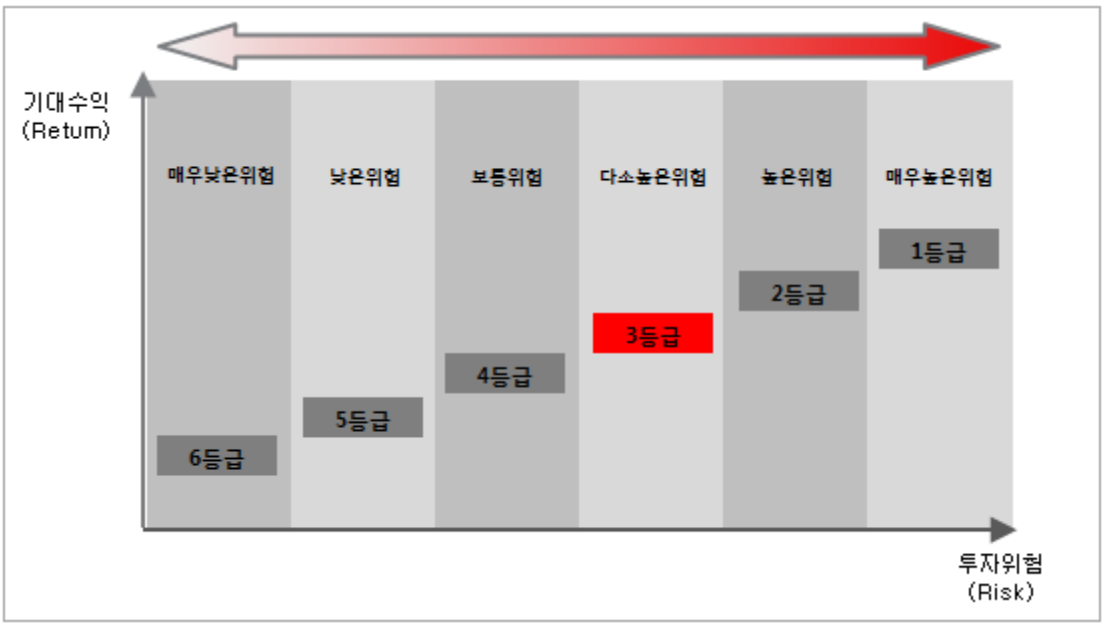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설>	(5)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종류 CG 수익증권 가입자)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

		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이하 순차적 연번 변경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주 1) 비교지수 : (: (KP200* 0.2 + MXWO*0.45 + RUGL*0.05 + MXEF *0.2 + RICIGLER *0.05 CALL*0.05)*0.5 +(CitiWGBI * 0.3 + IBOXIG *0.2 + LHVLTRUU *0.1 + 매경 BP * 0.35 + call*0.05) *0.4 +MSDISETD * 0.1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삭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별첨>

[변경전]



.주) 이 투자신탁은 추후 설정기간이 3 년이 경과하는 경우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 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 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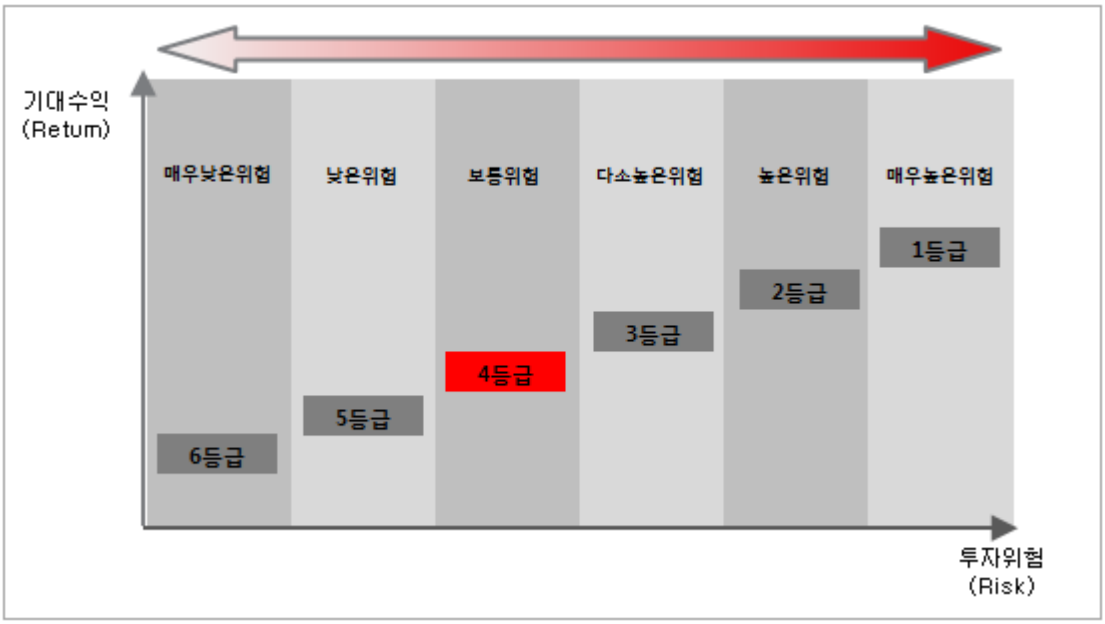
: 최직근 결산일 기준 설정된 후 3년이 미경과한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

		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위험등급분류기준과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 "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5)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6)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펀드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7) 다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펀드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8) 최대손실률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제외한 것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률을 말합니다. 다만, 당사가 추정 또는 예상한 최대손실률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높은 레버리지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합성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이 분류됩니다.

[변경후]



주1) 이 투자신탁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4 등급 보통 위험	5 등급 낮은 위험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변경전 :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변경후 : 하나UBS 행복한 TDF 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펀드명 및 클래스명 변경
2) 클린클래스(CG) 추가
3)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설정 후 3년 경과)
4) 투자위험등급 변경
5) 참조지수 삭제(모펀드 참조지수 포함)
6)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7년 10월 13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 행복한TDF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종류 C / 종류 C-E <추가>	종류 C-P / 종류 C-PE 종류 CG BX826
제 1 조(목적)	②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이다.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③이 투자신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투자신탁이다.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삭제> <삭제>

제 2 조의 2(투자신탁의 가입제한 등)	①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한다.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②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에 한한다.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삭제> <삭제>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단,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3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제3항 1. 종류 C 수익증권 : 가입 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2. 종류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추가>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행복한TDF 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단,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하나UBS 행복한TDF 203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제 3 항 1. 종류 C-P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2. 종류 C-P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4. 종류 C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1. 종류 C 수익증권 2. 종류 C-E 수익증권 <추가>	제1항 1. 종류 C-P 수익증권 2. 종류 C-PE 수익증권 4. 종류 CG 수익증권
제16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생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생략, 현행과 같음)
제39조 (보수)	제 3 항 [종류 C 수익증권] (생략) [종류 C-E 수익증권] (생략) <신설>	제3항 [종류 C-P 수익증권] (현행과 동일) [종류 C-PE 수익증권] (현행과 동일) [종류 CG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1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제41조(환매수수료)	제 2 항 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	제 2 항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C, C-E, C-P2 수익증권 : 없음 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이 상충될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C-P 클래스 및 C-PE 클래스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이 상충될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 행복한 TDF 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투자 위험등급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생략)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생략, 현행과 동일)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가입자격**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종류 C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E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가입자격** <삭제> 종류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PE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 종류 C-P2 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업데이트) · 종류 C-P2, CG 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생략)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생략, 현행과 동일)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주 1) 비교지수 : (KP200* 0.2 + MXWO*0.45 + RUGL*0.05 + MXEF *0.2 + RICIGLER *0.05 CALL*0.05)*0.5 +(CitiWGBI * 0.3 + IBOXIG *0.2 + LHVLTRUU *0.1 + 매경BP * 0.35 + call*0.05) *0.4 +MSDISETD * 0.1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 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삭제> <삭제>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변동성이 크거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높은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6.74%임에 따라 6 등급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1)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생략) <신설>	**1. 과세** (1)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C-PE 수익증권 가입자 (현행과 동일) (3)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G 수익증권 가입자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 행복한 TDF 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3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C C-E <추가> 주)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2026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35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행복한 TDF 203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C-P C-PE CG 펀드코드: BX826 주)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2026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하나 UBS 행복한 TDF 2035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바. 가입자격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3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행복한 TDF 203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C C-E <추가> 주)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2026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35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C-P C-PE CG 펀드코드: BX826 주)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2026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하나 UBS 행복한 TDF 2035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3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 :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E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추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하나UBS 행복한 TDF 203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PE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G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생략)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생략, 현행과 동일)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참고지수 :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참고지수 : <삭제>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참고지수 :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변동성이 크거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높은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참고지수 : <삭제>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6.74%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 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 주) 이 투자신탁은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 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세첨 참조>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별첨 참조>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 :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E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종류 CG 신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PE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G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table>
<tr><td></td><td></td><td>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
종류 C-E
<CG 클래스 신설>

<br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CG	57	181	317	722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신설> <신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C-PE 수익증권 가입자 (4)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5)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종류 CG 수익증권 가입자)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이하 순차적 연번 변경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주 1) 비교지수 : (KP200* 0.2 + MXWO*0.45 + RUGL*0.05 + MXEF *0.2 + RICIGLER *0.05 CALL*0.05)*0.5 +(CitiWGBI * 0.3 + IBOXIG *0.2 + LHVLTRUU *0.1 + 매경BP * 0.35 + call*0.05) *0.4 +MSDISETD * 0.1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삭제>

	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추가)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순차적 연번 변경)

< 별첨 >

[변경 전]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 최직근 결산일 기준 설정된 후 3년이 미경과한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위험등급분류기준과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 "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5)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6)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펀드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7) 다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펀드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8) 최대손실률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제외한 것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률을 말합니다. 다만, 당사가 추정 또는 예상한 최대손실률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높은 레버리지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합성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이 분류됩니다.

[변경 후]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4 등급 보통 위험	5 등급 낮은 위험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변경전 : 하나UBS 행복knowhow연금 204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변경후 : 하나UBS 행복한 TDF 204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펀드명 및 클래스명 변경
2) 클린클래스(CG) 추가
3)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설정 후 3년 경과)
4) 투자위험등급 변경
5) 참조지수 삭제(모펀드 참조지수 포함)
6)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7년 10월 13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4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 행복한 TDF 204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종류 C / 종류 C-E <추가>	종류 C-P / 종류 C-PE 종류 CG BX828
제 1 조(목적)	②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이다.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③이 투자신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투자신탁이다.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삭제> <삭제>
제 2 조의	①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삭제>

2(투자신탁의 가입제한 등)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한다.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②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에 한한다.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삭제>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4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단, 2031년 1월 1일 이후에는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제3항 1. 종류 C 수익증권 : 가입 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2. 종류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추가>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행복한 TDF 204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단, 2031년 1월 1일 이후에는 "하나UBS 행복한 TDF 20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제 3 항 1. 종류 C-P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2. 종류 C-P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4. 종류 C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1. 종류 C 수익 증권 2. 종류 C-E 수익증권 <추가>	제1항 1. 종류 C-P 수익증권 2. 종류 C-PE 수익증권 4. 종류 CG 수익증권
제16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31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31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 (보수)	제 3 항 [종류 C 수익증권] (생략) [종류 C-E 수익증권] (생략) <신설>	제3항 [종류 C-P 수익증권] (현행과 동일) [종류 C-PE 수익증권] (현행과 동일) [종류 CG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1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제41조(환매수수료)	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C, C-E, C-P2 수익증권 : 없음 ③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이 상충될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C-P 클래스 및 C-PE 클래스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이 상충될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행복knowhow 연금204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행복한 TDF 204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투자위험등급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31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31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가입자격**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종류 C	**가입자격** <삭제> 종류 C-P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E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보수** (생략) ※ 주석사항 · 종류C-P2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PE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보수** (업데이트) ※ 주석사항 · 종류C-P2 및 CG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31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31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 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변동성이 크거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높은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7.72%임에 따라 6 등급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1)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생략) <신설>	**1. 과세** (1)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C-PE 수익증권 가입자 (현행과 동일) (3)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G 수익증권 가입자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4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 행복한 TDF 2040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40 증권자투자신탁주식권혼합-재간접형] C C-E <추가> 주)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2031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행복한 TDF 2040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C-P C-PE CG 펀드코드 : BX828 주)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2031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하나 UBS 행복한 TDF 20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바. 가입자격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4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C C-E <추가> 주)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2031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행복한 TDF 204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C-P C-PE CG 펀드코드 : BX828 주)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2031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하나 UBS 행복한 TDF 20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25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 :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E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하나UBS 행복한 TDF 2025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PE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31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21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참고지수 :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참고지수 : <삭제>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참고지수 :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참고지수 : <삭제>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변동성이 크거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높은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 년이상입니다. <별첨 참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7.72%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별첨 참조>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 :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E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종류 CG 신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PE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G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 종류 C-E <CG 클래스 신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 종류 C-E <CG 클래스 신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생략) 종류 C 종류 C-E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P 종류 C-PE 종류 CG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P 종류 C-PE 종류 CG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종류 C-P 종류 C-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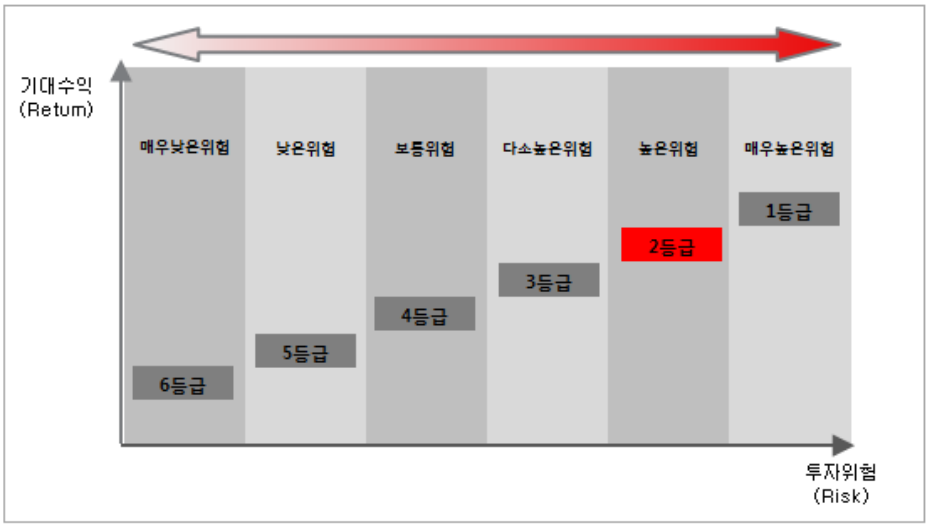
	<CG 클래스 신설>	<table><tr><th>구분</th><th>1년후</th><th>3년후</th><th>5년후</th><th>10년후</th></tr><tr><td>종류 CG</td><td>68</td><td>213</td><td>374</td><td>851</td></tr></table>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신설> <신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C-PE 수익증권 가입자 (4)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5)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종류 CG 수익증권 가입자)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

		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주 1) 비교지수 : (KP200* 0.2 + MXWO*0.45 + RUGL*0.05 + MXEF *0.2 + RICIGLER *0.05 CALL*0.05)*0.7 +(CitiWGBI * 0.3 + IBOXIG *0.2 + LHVLTRUU *0.1 + 매경 BP * 0.35 + call*0.05) *0.2 +MSDISETD * 0.1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삭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별첨>

[변경전]



주) 이 투자신탁은 추후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 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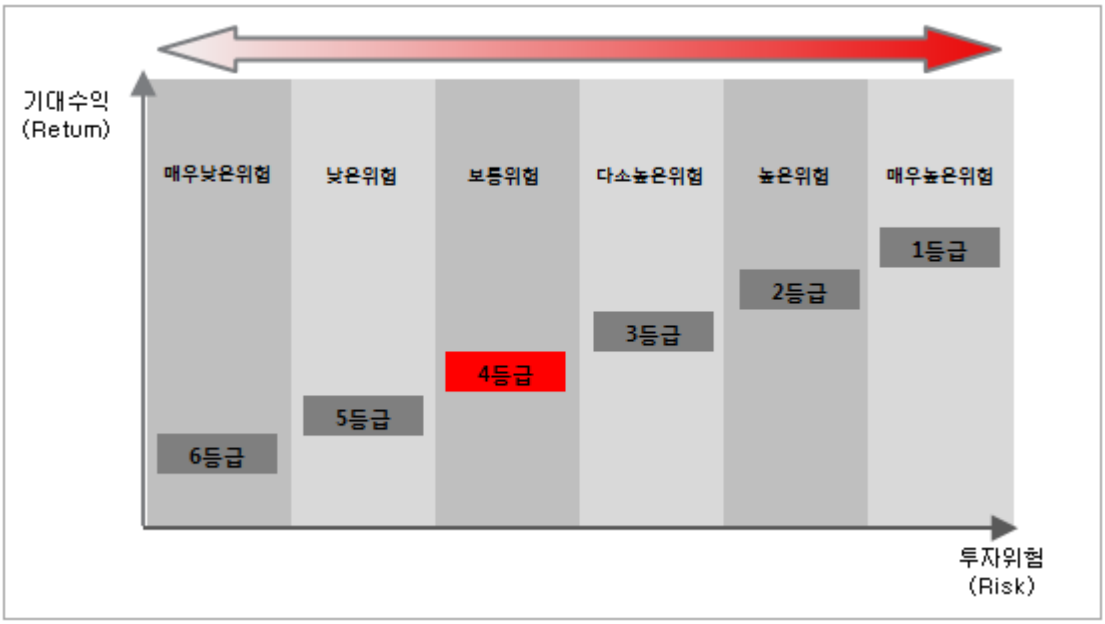
: 최직근 결산일 기준 설정된 후 3년이 미경과한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위험등급분류기준과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 "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5)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6)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펀드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7) 다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펀드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8) 최대손실률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제외한 것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률을 말합니다. 다만, 당사가 추정 또는 예상한 최대손실률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높은 레버리지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합성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이 분류됩니다.

[변경후]



주1) 이 투자신탁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4 등급 보통 위험	5 등급 낮은 위험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변경전 : 하나UBS 행복knowhow연금 204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변경후 : 하나UBS 행복한 TDF 204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펀드명 및 클래스명 변경
2) 클린클래스(CG) 추가
3)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설정 후 3년 경과)
4) 투자위험등급 변경
5) 참조지수 삭제(모펀드 참조지수 포함)
6)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7년 10월 13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4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 행복한 TDF 204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종류 C / 종류 C-E <추가>	종류 C-P / 종류 C-PE 종류 CG BX829
제 1 조(목적)	②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이다.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③이 투자신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투자신탁이다.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삭제> <삭제>
제 2 조의	①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삭제>

2(투자신탁의 가입제한 등)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한다.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②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에 한한다.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삭제>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4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단, 2036년 1월 1일 이후에는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4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제3항 1. 종류 C 수익증권 : 가입 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2. 종류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추가>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행복한 TDF 204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단, 2036년 1월 1일 이후에는 "하나UBS 행복한 TDF 204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제 3 항 1. 종류 C-P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2. 종류 C-P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4. 종류 C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1. 종류 C 수익 증권 2. 종류 C-E 수익증권 <추가>	제1항 1. 종류 C-P 수익증권 2. 종류 C-PE 수익증권 4. 종류 CG 수익증권
제16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36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36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 (보수)	제 3 항 [종류 C 수익증권] (생략) [종류 C-E 수익증권] (생략) <신설>	제3항 [종류 C-P 수익증권] (현행과 동일) [종류 C-PE 수익증권] (현행과 동일) [종류 CG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1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제41조(환매수수료)	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C, C-E, C-P2 수익증권 : 없음 ③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이 상충될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C-P 클래스 및 C-PE 클래스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이 상충될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행복knowhow 연금204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 행복한 TDF 204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투자위험등급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36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36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가입자격**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종류 C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E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가입자격** <삭제> 종류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PE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보수 (생략) ※ 주석사항 · 종류C-P2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보수** (업데이트) ※ 주석사항 · 종류C-P2 및 CG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36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36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주 1) 비교지수 : (KP200* 0.2 + MXWO*0.45 + RUGL*0.05 + MXEF	**[1] 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삭제>

	*0.2 + RICIGLER *0.05 CALL*0.05)*0.8 +(CitiWGBI * 0.3 + IBOXIG *0.2 + LHVLTRUU *0.1 + 매경BP * 0.35 + call*0.05) *0.1 +MSDISETD * 0.1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변동성이 크거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높은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8.57%임에 따라 6 등급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1)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생략) <신설>	**1. 과세** (1)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C-PE 수익증권 가입자 (현행과 동일) (3)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G 수익증권 가입자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3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 행복한 TDF 2030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4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C C-E <추가> 주)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2036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45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행복한 TDF 2045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C-P C-PE CG 펀드코드 : BX829 주)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2036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하나 UBS 행복한 TDF 2045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

	재간접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바. 가입자격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4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C C-E <추가> 주)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2036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45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행복한 TDF 204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C-P C-PE CG 펀드코드 : BX824 주)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2036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하나 UBS 행복한 TDF 2045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하나 UBS 행복 knowhow 연금 2025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 :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E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 전용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하나UBS 행복한 TDF 2025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PE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수익증권 <추가>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G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36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36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참고지수 :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참고지수 : <삭제>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참고지수 :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참고지수 : <삭제>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변동성이 크거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높은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 년이상입니다. <별첨 참조>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8.57%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별첨 참조>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 :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table>
<tr>
<td></td>
<td>종류 C-E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종류 CG 신설>

나. 환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부담비율</th><th rowspan="2">비 고</th></tr>
<tr><th>종류 C, C-E, C-P2</th></tr>
<tr><td>환매수수료</td><td>없음</td><td>환매시1회</td></tr>
</table>
※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금액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td>
<td>수익증권

종류 C-PE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G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나. 환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td>
</tr>
<tr>
<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
종류 C-E
<CG 클래스 신설></td>
<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P
종류 C-PE
종류 CG</td>
</tr>
</table>

<table>
<tr><td></td><td>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
종류 C-E
<CG 클래스 신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생략)
종류 C
종류 C-E
<CG 클래스 신설></td><td>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P
종류 C-PE
종류 CG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종류 C-P
종류 C-PE
<table><tr><th>구분</th><th>1년후</th><th>3년후</th><th>5년후</th><th>10년후</th></tr><tr><td>종류 CG</td><td>68</td><td>213</td><td>374</td><td>851</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 C-E 수익증권 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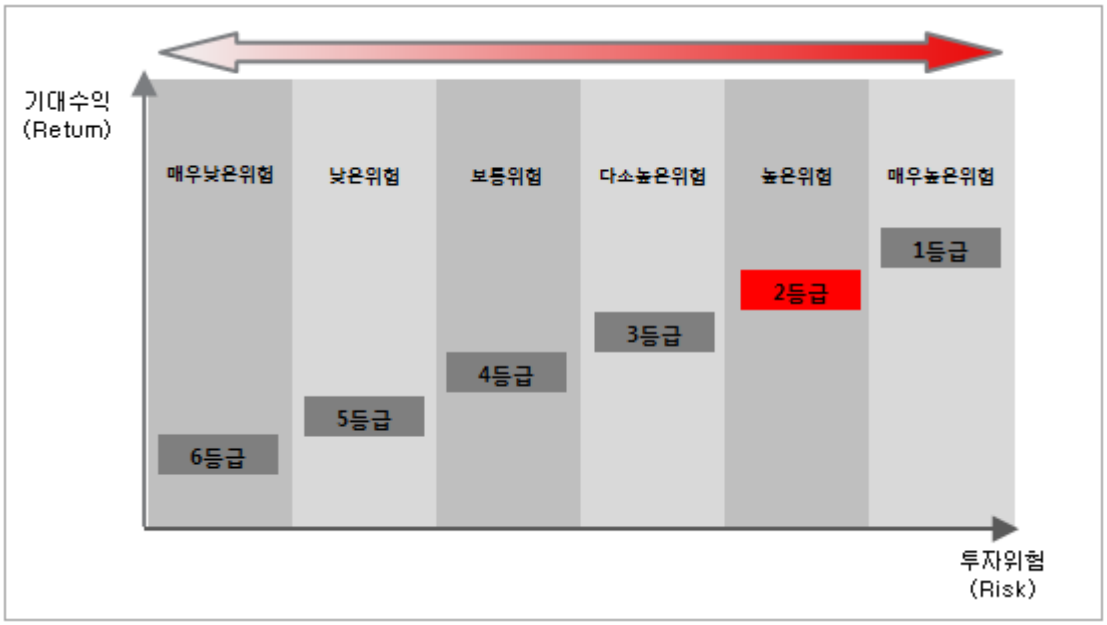
<신설></td><td>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C-PE 수익증권 가입자

(4)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td></tr>
</table>

	<신설>	외하고 있습니다. (5)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종류 CG 수익증권 가입자)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이하 순차적 연번 변경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주 1) 비교지수 : (KP200* 0.2 + MXWO*0.45 + RUGL*0.05 + MXEF *0.2 + RICIGLER *0.05 CALL*0.05)*0.8 +(CitiWGBI * 0.3 + IBOXIG *0.2 + LHVLTRUU *0.1 + 매경 BP * 0.35 + call*0.05) *0.1 +MSDISETD * 0.1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업데이트) <삭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별첨>
[변경전]



-.

주) 이 투자신탁은 추후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 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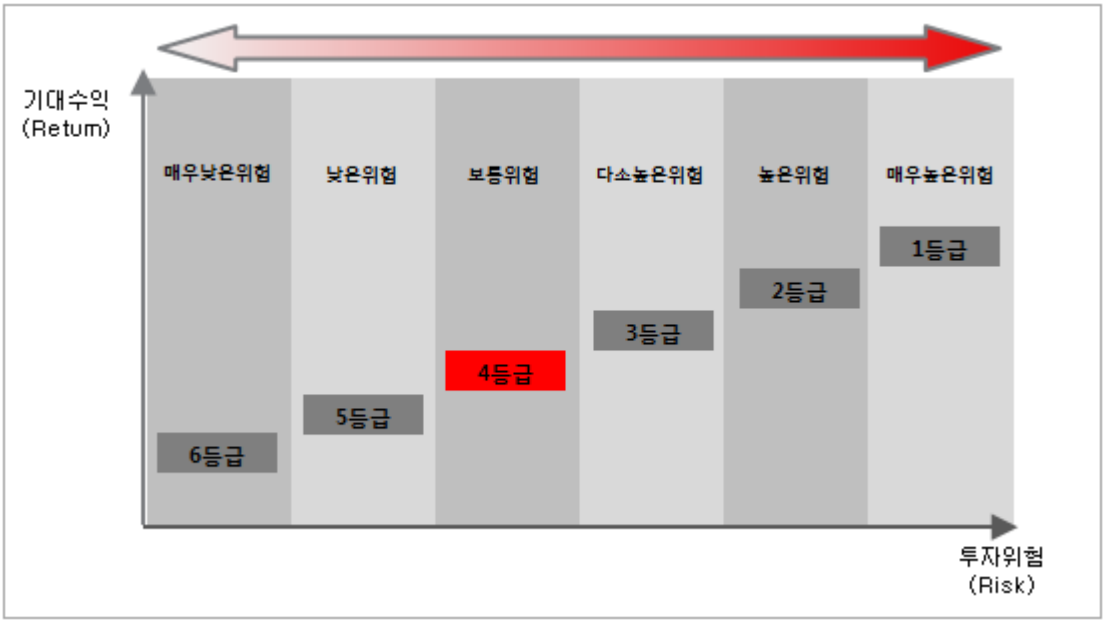
: 최직근 결산일 기준 설정된 후 3년이 미경과한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위험등급분류기준과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 "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5)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6)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펀드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7) 다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펀드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8) 최대손실률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제외한 것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률을 말합니다. 다만, 당사가 추정 또는 예상한 최대손실률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높은 레버리지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합성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이 분류됩니다.

[변경후]



주1) 이 투자신탁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4 등급 보통 위험	5 등급 낮은 위험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행복knowhow 글로벌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클린클래스(CG) 추가
2)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설정 후 3년 경과)
3) 투자위험등급 변경
4) 참조지수 삭제(모펀드 참조지수 포함)
5)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등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7년 10월 13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 3 항 <추가>	제 3 항 5. 종류 C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추가>	제1항 5. 종류 CG 수익증권
제39조 (보수)	제 3 항 <신설>	제3항 [종류 CG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7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위험 등급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 주석사항 · 종류C-P2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업데이트) ※ 주석사항 · 종류C-P2 및 CG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3) 참고지수** :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BP종합지수 35% + Call 5% ※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BP종합지수 3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3)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주 1) 비교지수 : Citigroup WGBI All Maturities 30% + Markit iBoxx USD Liquid[IBOXIG Index] 20% + Barclays VLI: High Yield Total 10% +매경BP 종합채권지수 35% + Call 5%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 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삭제>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국내 및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일부 투자함으로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 등급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28%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3) 수익자에대한 과세 : 종류 C-F 수익증권 가입자	**1. 과세** (3) 수익자에대한 과세 : 종류 C-F **및 CG** 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추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CG 펀드코드: BX830

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추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CG 펀드코드: BX830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별 가입자격> <추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G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3) 참고지수 :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를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3)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참고지수 :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참고지수 : <삭제>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 및 해외채권에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table>
<tr><td></td><td>주로 투자하며,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일부 투자함으로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 등급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별첨 참조></td><td>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28%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별첨 참조></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G 신설></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G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CG 클래스 신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생략)
<CG 클래스 신설></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G
집합투자업자보수 : 0.25%
판매회사보수 : 0.37%
신탁업자보수 : 0.03%
일반사무관리보수 : 0.02%
보수합계 : 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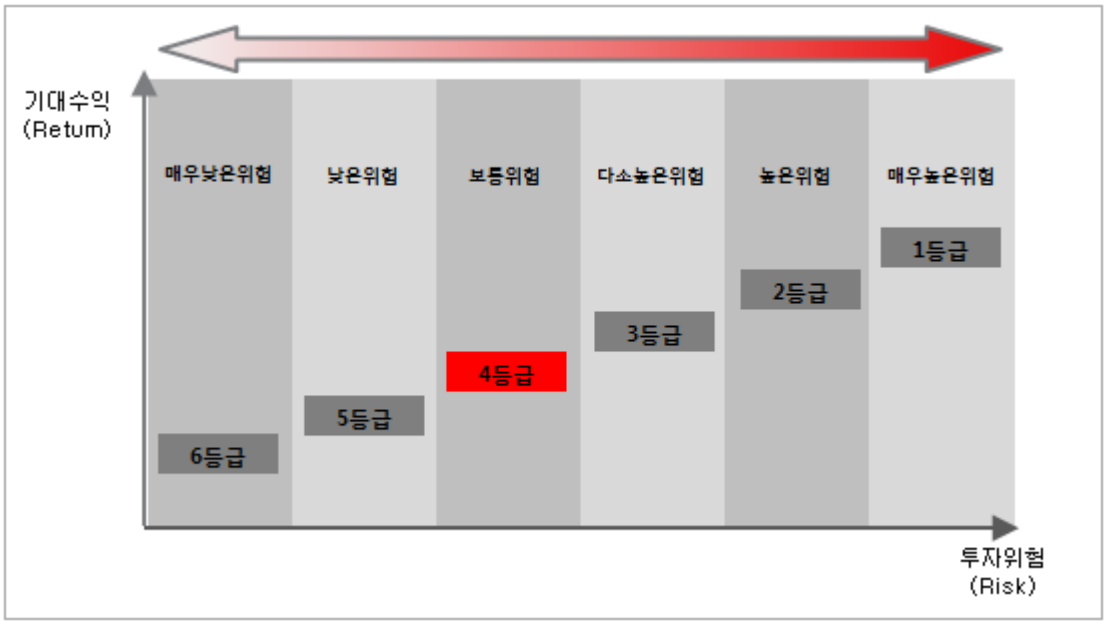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table><tr><th>구분</th><th>1년후</th><th>3년후</th><th>5년후</th><th>10년후</th></tr><tr><td>종류 CG</td><td>69</td><td>216</td><td>379</td><td>864</td></tr></table></td></tr>
</table>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5)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종류 C-F 수익증권 가입자)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5)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종류 C-F 및 CG 수익증권 가입자)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주 1) 비교지수 : Citigroup WGBI All Maturities 30% +Markit iBoxx USD Liquid[IBOXIG Index] 20% + Barclays VLI: High Yield Total 10% +매경 BP 종합채권지수 35% + Call 5%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삭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별첨>

[변경전]



주) 이 투자신탁은 추후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

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 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 최직근 결산일 기준 설정된 후 3년이 미경과한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위험등급분류기준과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 "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5)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

급을 조정합니다.

6)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펀드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7) 다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펀드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8) 최대손실률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제외한 것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률을 말합니다. 다만, 당사가 추정 또는 예상한 최대손실률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높은 레버리지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합성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이 분류됩니다.

[변경후]



주1) 이 투자신탁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행복knowhow 글로벌주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클린클래스(종류 CG) 신설

2) 참조지수 삭제(모펀드 참조지수 포함)

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7년 10월 13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추가>	종류 CG : BX831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제3항 <추가>	제3항 5. 종류 C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추가>	제1항 5. 종류 CG 수익증권
제39조 (보수)	제3항 <추가>	제3항 [종류CG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3.00 2.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6.70 3.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0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집합투자	**보수**	**보수**

기구의 개요	**※ 주석사항** · 종류 C-P2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석사항** · 종류 C-P2, CG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3) 비교지수**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 ※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3)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1) 비교지수 :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삭제>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3)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F 수익증권 가입자**	**(3)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F, CG 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G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CG BX831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G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CG BX831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10월 13일 1) 클린클래스(종류 CG) 신설 2) 참조지수 삭제(모펀드 참조지수 포함) 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 CG 신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별** / **가입자격** 종류 CG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사항	(3) 참고지수 :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 참고지수 :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3)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 참고지수 : <삭제>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

<table>
<tr><td></td><td>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td><td>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생략) 본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 년 이상입니다.</td><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생략, 현행과 동일) <삭제></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G 신설></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table><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tr><td>종류 C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G 신설></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지급비율</th><th rowspan="2">지급시기</th></tr><tr><th>종류 CG</th></tr><tr><td>선취판매수수료</td><td>해당사항 없음</td><td>매입시</td></tr><tr><td>후취판매수수료</td><td>해당사항 없음</td><td>환매시</td></tr></table></td></tr>
</table>

<table>
<tr>
<td></td>
<td>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G 신설>

<br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코어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참조지수 삭제(모펀드 참조지수 포함)

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7년 10월 13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3) 참조지수** 1)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 2) Bloomberg Barclays Global Treasury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BP종합지수 35% + Call 5% 3) Hedge Fund Research HFRX Equity Hedge Index x 95% + Call 5% ※ 이 집합투자기구는 글로벌 주식 및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성과 비교를 위하여 금융시장 움직임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주식, 채권, 롱숏전략 지수 중,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지수를 당 펀드의 전략배분 비중으로 가중하여 참조지수로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3)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글로벌 주식 및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참조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10월 13일 1) 참조지수 삭제(모펀드 참조지수 포함) 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3) 참고지수 :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3)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가. 투자전략 • 참고지수 :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가. 투자전략 • 참고지수 : <삭제>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가. 투자전략 • 참조지수 :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해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를 참조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가. 투자전략 • 참고지수 : <삭제>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클린클래스(종류 AG, CG) 신설
- 모펀드 참조지수 삭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7년 10월 13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추가>	종류AG : BX832 종류CG : BX833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제3항 <추가>	제3항 4. 종류AG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5. 종류CG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추가>	제1항 4. 종류 AG 수익증권 5. 종류 CG 수익증권

제39조 (보수)	제3항 <추가>	제3항 [종류AG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3.00 2.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2.50 3.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5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2 [종류CG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3.00 2.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5.00 3.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5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2
제40조 (판매 수수료)	제2항 <추가> 제3항 제2항제1호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생략)	제2항 2. 종류 AG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 이내 제3항 제2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생략, 현행과 동일)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 주석사항** · 종류 C-F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 주석사항** · 종류 C-F, AG 및 CG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AG, CG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G BX832 CG BX833

<table>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AG, CG 신설></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G BX832
CG BX833</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10월 13일
- 클린클래스(종류 AG, CG) 신설
- 모펀드 참조지수 삭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 AG, CG 신설></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table><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tr><td>종류 A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r><tr><td>종류 C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r>
</table>

	• 참고지수 :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 참고지수 : <삭제>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참고지수 :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	2)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참고지수 : <삭제>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table>
<tr><td></td><td>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td><td></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생략) 본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 년이상입니다.</td><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생략, 현행과 동일) <삭제></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G, CG 신설></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table><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tr><td>종류 A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r><tr><td>종류 C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td></tr>
</table>

구에 관한 사항

<종류 AG, CG 신설>

구 분	종류형		지급 시기
	종류 AG	종류 CG	
선취 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0.5%이내	해당사항 없음	매입시
후취 판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 수수료	- 30 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 30 일 이상 90 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환매시

주)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납입금액의 1.0%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

주) 판매수수료는 상기 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AG, CG 신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종류 AG	종류 CG
집합투자업자보수	0.3000%	0.3000%
판매회사보수	0.2500%	0.5000%
신탁업자보수	0.0500%	0.05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220%	0.0220%
보수합계	0.6220%	0.8720%
기타비용	실비	실비
총보수및비용	0.6220%	0.8720%
합성총보수및비용	0.8820%	1.1320%
증권거래비용	실비	실비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종류 AG, CG 신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AG	140	334	547	1,181
종류CG	116	366	641	1,459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백만원)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백만원)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월지급식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클린클래스(종류 AG, CG) 신설
- 모펀드 참조지수 삭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7년 10월 13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추가>	종류AG : BX834 종류CG : BX835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제3항 <추가>	제3항 4. 종류AG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5. 종류CG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추가>	제1항 4. 종류 AG 수익증권 5. 종류 CG 수익증권

제39조 (보수)	제3항 <추가>	제3항 [종류AG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3.00 2.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2.50 3.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5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2 [종류CG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3.00 2.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5.00 3.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5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2
제40조 (판매 수수료)	제2항 <추가> 제3항 제2항제1호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생략)	제2항 2. 종류 AG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 이내 제3항 제2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생략, 현행과 동일)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 주석사항** · 종류 C-F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 주석사항** · 종류 C-F, AG 및 CG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AG, CG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G BX834 CG BX835

<table>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AG, CG 신설></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G BX834
CG BX835</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10월 13일
- 클린클래스(종류 AG, CG) 신설
- 모펀드 참조지수 삭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 AG, CG 신설></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table><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tr><td>종류 A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r><tr><td>종류 C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r>
</table>

	• 참고지수 :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 참고지수 : <삭제>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참고지수 :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	2)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참고지수 : <삭제>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table>
<tr><td></td><td>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td><td></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생략) 본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 년이상입니다.</td><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생략, 현행과 동일) <삭제></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G, CG 신설></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table><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tr><td>종류 A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r><tr><td>종류 C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td></tr>
</table>

구에 관한 사항

<종류 AG, CG 신설>

구 분	종류형		지급 시기
	종류 AG	종류 CG	
선취 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0.5%이내	해당사항 없음	매입시
후취 판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 수수료	- 30 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 30 일 이상 90 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환매시

주)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납입금액의 1.0%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

주) 판매수수료는 상기 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AG, CG 신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종류 AG	종류 CG
집합투자업자보수	0.3000%	0.3000%
판매회사보수	0.2500%	0.5000%
신탁업자보수	0.0500%	0.05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220%	0.0220%
보수합계	0.6220%	0.8720%
기타비용	실비	실비
총보수및비용	0.6220%	0.8720%
합성총보수및비용	0.8820%	1.1320%
증권거래비용	실비	실비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종류 AG, CG 신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AG	140	334	547	1,181
종류CG	116	366	641	1,459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재형 글로벌 멀티에셋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모투자신탁 참조지수 삭제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7년 10월 13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10월 13일 - 모투자신탁 참조지수 삭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참고지수 :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참고지수 : <삭제>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참고지수 :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	2)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참고지수 : <삭제>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넘버원 변액보험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1)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설정 후 3년 경과)
2) 투자위험등급 변경
3)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4)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7년 10월 13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위험등급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2.01%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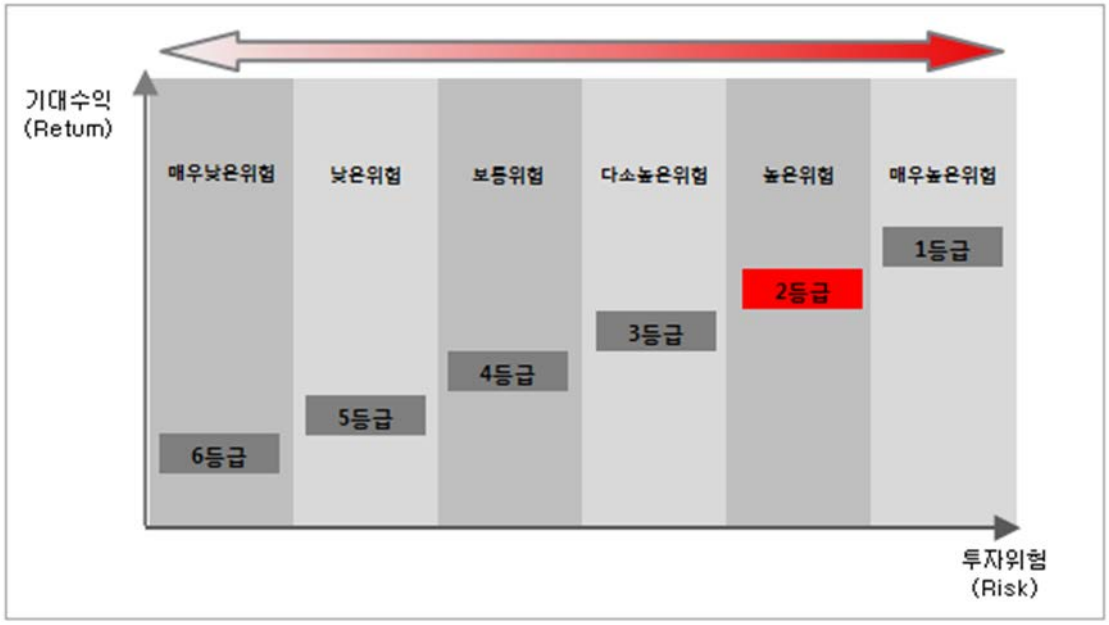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10월 13일 1)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설정 후 3년 경과) 2) 투자위험등급 변경 3)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4)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생략)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 <별첨 참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2.01%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략, 현행과 동일) <삭제> <별첨 참조>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생략)	**1.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4.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생략)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4.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별첨>
[변경전]

-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 년이상입니다.



주) 이 투자신탁은 추후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 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 최직근 결산일 기준 설정된 후 3년이 미경과한 집합투자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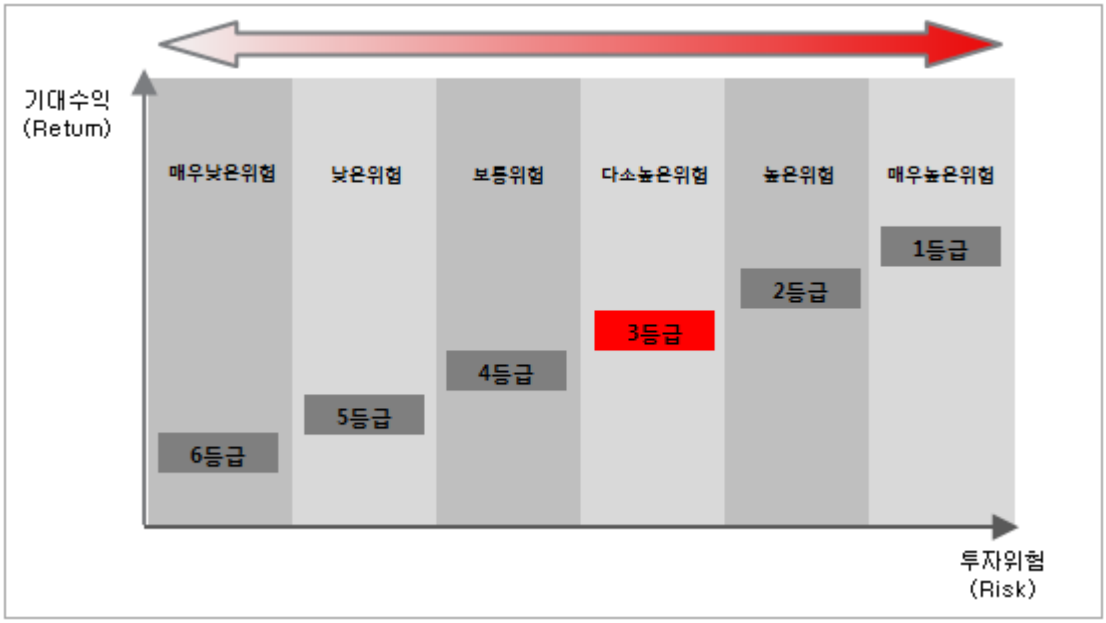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

		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위험등급분류기준과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 "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5)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6)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펀드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7) 다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펀드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8) 최대손실률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제외한 것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률을 말합니다. 다만, 당사가 추정 또는 예상한 최대손실률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높은 레버리지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합성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이 분류됩니다.

[변경후]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2.01%**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파워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7년 10월 13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2.10%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80%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10월 13일 1)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2)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2.10%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80%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Smart Up China AShare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및 업데이트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7년 10월 13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2.18%임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생략)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1.13%임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생략, 현행과 동일) <삭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10월 13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및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2.18% 임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생략)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 년이상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1.13% 임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생략, 현행과 동일)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추가)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8)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순차적 연번 변경)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7년 10월 13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3항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4.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5.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6.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204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7.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204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제3항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하나UBS 행복한 TDF 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4. 하나UBS 행복한 TDF 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5. 하나UBS 행복한 TDF 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6. 하나UBS 행복한 TDF 204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7. 하나UBS 행복한 TDF 204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6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6호 가목, 나목 및 마목,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6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6호 가목, 나목 및 마목,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